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에 전자장치 부착 추가 등〉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10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전자장치 부착 도입 필요성	6
3. 검토의견	10
가.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추가	10
나. 피해자보호명령에 전자장치 부착 추가	16
다. 전자장치 효용 훼손죄 처벌	19
※ 참고자료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관련 규정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5. 8. 27.
3. 회 부 일: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은 아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나.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¹⁾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²⁾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①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법원의 임시조치 및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에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②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기존 격리 및 접근금지³⁾ 임시조치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안 제29조제5항), ③ 임시조치 결정 집행관에 ‘보호관찰관’을 추가함(안 제29조제9항).

1)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2) 제2조(정의)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개정안 신설 내용)

- 또한 ④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안 제29조제13항 및 제55조의2제7항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63조제3항), ⑤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르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및 제55조의2제8항 신설).

구 분		주요내용
임시조치	임시조치의 청구 (안 제8조제1항)	전자장치 부착 추가
	임시조치 (안 제29조제1호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추가
	임시조치기간 (안 제29조제5항)	격리,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임시조치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임시조치결정 집행 공무원 (안 제29조제9항)	보호관찰관 추가
	전자장치 효용 훼손 금지 (안 제29조제13항)	전자장치 부착자는 다음 행위 금지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임시조치의 집행절차 (안 제29조의2제3항)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의 집행 등 절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름

구 분		주요내용
피 해 자 보 호 명 령	피해자보호명령 (안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추가
	전자장치 효용 훼손 금지 (안 제55조의2제7항)	임시조치의 전자장치 효용 훼손 금지 와 동일
	피해자보호명령결정 집행 공무원과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절차(안 제55조의2제8항)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 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 찰관이 집행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령의 집행 등 절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안 제55조의3제1항)	기간 연장을 2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변경
벌 칙	전자장치 효용 훼손 위반죄(안 제63조제3항제2호)	전자장치 효용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전자장치 부착 도입 필요성

-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두고 있는데, 임시조치의 유형으로는 격리,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형은 격리,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이 있음.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임시조치 (제8조, 제29조)	▶ <u>판사</u>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u>임시조치</u> 가능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u>검사</u>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1호~3호를 청구 가능. ▶ 임시조치 위반으로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u>검사</u>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5호를 청구 가능.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2, 제55조의4)	▶ <u>판사</u>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의 <u>피해자보호명령</u> 가능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u>판사</u>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임시보호명령 가능

□ 그런데 현행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나 경찰의 신변안전조치⁴⁾ 등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조치는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제재가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⁵⁾,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도입은 현행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에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위반을 보다 쉽게 감시·제재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3. (생략)

5) 접근금지명령 위반이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적음(국회입법조사처의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2022.1.28.).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은 당초 과태료 처분에서 2021년 1월 20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제2항).

□ 다만,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1호,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⁶⁾.

○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범죄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특정범죄⁷⁾로 정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6)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범죄인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u>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u> 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1. ----- ----- <u>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u> -----. (이하 생략)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근거 법률>

근거 법률	적용대상	관련 조문
전자장치 부착법	특정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⁸⁾)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의 부착’(제1항제3호의2)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 및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이에 따른 해당 조치의 범죄예방 효과와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8) 참고자료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 조문별 검토의견

가.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추가

□ 개정안은 ①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법원의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안 제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호의2), ②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기존 격리 및 접근금지⁹⁾에 대한 임시조치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안 제29조제5항).

○ 또한 ③ 임시조치 결정 집행관에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안 제29조제9항), ④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안 제29조제13항 신설), ⑤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등에 관하여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르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 ----- -----

9)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개정안 신설 내용)

현행	개정안
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u>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u>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제1호부터 <u>제3호까지의</u> 임시조치기간은 <u>2개월</u>,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u>제29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의</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조치)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u>부착</u>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u>----<u>3개월</u>----- ----- -----. ----- ----- ----- ----- -----.

현행	개정안
⑥ ~ ⑧ (생략)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u>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u> ⑩ ~ ⑫ (생략) <u><신설></u>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 -----<u>사법경찰관리,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u>-----.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른다.

□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도입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집행공무원으로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한편, 안 제29조제5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있는데¹⁰⁾,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다는 점, 유사 입법례(스토킹범죄 처벌법) 등을 고려해볼 때 연장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이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29조제5항 본문에서는 전자장치 부착의 임시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는데,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¹¹⁾.

- 따라서 제29조제5항 단서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0) 접근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2회에 한정하여 각 2개월씩 최장 6개월이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 등에 대하여는 각 3개월씩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11) 현행법 제29조제5항에서는 임시조치기간과 그 연장에 대한 내용을 본문 및 단서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제29조(임시조치)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둘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신중한 결정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의 경우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결정 전에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3항12)에서는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셋째, 이 법 시행 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소급효 가능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하여¹³⁾,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정폭력범죄로부터

12)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생략)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3) 헌법재판소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것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부칙에서 법 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례를 둔 바 있음¹⁴⁾.

○ 넷째, 안 제29조제5항에서는 임시조치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임시조치를 하고 시행 후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부칙에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도 기간연장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¹⁵⁾.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음(2012. 12. 27. 2010헌가82).

- 14) 스토킹처벌법 부칙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3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15) 스토킹처벌법 부칙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4조(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피해자보호명령에 전자장치 부착 추가

- 개정안은 ①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에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안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②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안 제55조의2제7항 신설),
- ③ 피해자보호명령 집행공무원으로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을 규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3에 따르도록 함(안 제55조의2제8항 신설).
- ④ 또한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함(안 제5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전자장치의 부착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 전자장치 부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도입할 경우,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의 집행공무원으로 보호관찰관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한편, 안 제55조의3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데, 앞서 전자장치 부착의 임시조치와 유사한 취지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다는 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점¹⁶⁾ 등을 고려해볼 때 연장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앞서 임시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에도 ① 전자장치 부착결정 전에 의견정취 절차 추가, ② 이 법 시행 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③ 피해자보호명령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전자장치 효용 훼손죄 처벌

□ 개정안은 안 제29조제13항¹⁷⁾ 또는 안 제55조의2제7항¹⁸⁾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제3항제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 ② (생략) ③ <u>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설></u> <u><신설></u> ④ (생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1. <u>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u> 2. <u>제29조제13항 또는 제5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u> ④ (현행과 같음)

17) 안 제29조(임시조치) ⑬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18) 안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⑦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피해자 보호명령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개정안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게 전자장치 분리·손상하는 행위 등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동 금지행위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도 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 법체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참고자료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관련 규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부칙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3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
킹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051